

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(법률 제11312호) 제5장제28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>

제2조(명칭) 본 교육원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(이하“교육원”)이라 한다.

제3조(정의) “문화예술교육사”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의2(사업) 문화예술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<신설 2015.1.13>

1.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개발과 개설
2.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
3.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
4. 기타 문화예술교육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4조(모집분야) 본 교육원의 수강생 모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6개 전공분야(공예, 디자인, 만화·애니메이션, 무용, 미술, 연극)로 한다.

제5조(소재지) 본 교육원은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캠퍼스 외 지역에 교육원 본원 및 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1.13>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6조(조직) 교육원에는 원장, 책임교수, 팀장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구성) ①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특수신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5.1.13>

② 교육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모집 분야별로 책임교수를 두며, 책임교수는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팀장은 교육원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교육원의 교학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외래교수 위촉 등) ① 외래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.

② 외래교수의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문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나 그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교육원의 기획수립, 대외홍보 등을 위하여 원장은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래교수와 본교 교직원인사규정 제54조에 의해 임용된 특수신분교수(객원교수 등)에게 별도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위원회 설치)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를 둔다.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원장과 모집 분야별 책임교수를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

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4.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수강인원 및 학습비(수강료)에 관한 사항
6. 기타 문화예술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2조(회의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수강등록 및 납부금

제13조(등록 및 입학) 본 교육원의 수강등록과 입학 시기는 매학기에 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수강자격) 본 교육원의 수강자격은 예술전공분야의 재학생을 제외한 국내·외 고졸이상 학력을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.

제15조(지원절차) 본 교육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 1부.
2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.
3. 수강신청서 1부.
4. 최종학력(예정)증명서 1부.
5. 최종학력 성적증명서(대졸 졸업 및 예정자) 1부.
6. 경력 및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7.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(3*4cm) 2매

제16조(선발절차) 본 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각 모집 분야별로 원서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제17조(수강등록) ① 수강생은 수강신청 과목의 학점(시수)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강료의 반환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51조 납입금의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장 수업 및 교육과정

제18조(학기) 본 교육원은 두 학기(1학기,2학기)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로 계절학기(여름, 겨울)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(수업운영)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주관과 야간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원과 학부(과)에 개설된 과목과 담당교수가 동일할 경우 담당교수는 문화예술교육원장, 교학지원처장,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학부(과)생과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수강생의 성적 및 출석은 제20조에 의하여 평가한다.

제20조(성적 및 출석) 문화예술교육사과정의 성적은 산출하지 않으며 과목별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 시 P(합격)로 평가하며,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F(불합격)으로 평가한다.

제21조(휴업일)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개교기념일(5월 17일)
2.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

② 비상재해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제1항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.

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을 과할 수 있다.

제22조(교육과정) ① 본 교육원의 문화예술교육사 2급 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수역량영역, 직무소양영역, 예술전문성영역으로 구분한다.

② 문화예술교육사 2급 과정의 세부 교과목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1항 「별표 2」 과 같으며 19과목 720시간(48학점)으로 편성한다.

제6장 수료증 및 자격증 등

제23조(수료증) ① 본 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전체를 이수한 자와 일부를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[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[별지 제5호 서식]]을 수여한다.

② 수료증을 발급한 후 [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[별지 제6호 서식]] 수료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료증발급현황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자격증교부신청)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원하는 수료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「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」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우편 접수한다.

제25조(자격증 교부)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「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」 서류내용 검토 후 자격요건 충족이 인정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 한다.

제26조(교육기관 변경사항 보고)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「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」에 의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육기관의 명칭
2. 교육기관의 대표자
3. 교육기관의 소재지
4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5. 교육경비 산출내역서

제7장 수강생 지도 및 장학금

제27조(수강생지도) 본 교육원의 수강생은 학습 활동 전반에 관하여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28조(포상)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29조(징계) 원장은 교육원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제30조(특전) 교육원생에게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도서관 이용 및 열람
2. 취업지원실 이용
3. 전공 실습실 사용

제31조(장학금) 본 교육원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본 교육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, 본 교 교직원(배우자) 및 직계자녀,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과정 모집요강에 의한 장학금을 교육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.

제8장 재정

제32조(회계)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하며, 별도 재정으로 관리한다.

제33조(예산승인) 원장은 본 교육원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4조(결산보고) 원장은 사업 수행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칙

제35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, 예원예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3. 3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○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1항의 「별표 2」: 교육과정

▷ 1급 교육과정 : 7과목이상 180시간

교과영역	교 과 목	최저이수시간
직 무 소 양	문화정책 사례연구, 예술경영(행정), 문제해결기법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 파트너십, 한국의 문화와 미의식	90시간 (3과목 이상)
예술교육전문성	문화예술교육과정 설계, 문화예술교육사례 워크숍 예술치유, 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공동체기반의 문화예술교육,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	90시간 (4과목 이상)

▷ 2급 교육과정 : 19과목 48학점 720시간

교과영역	교 과 목	최저이수시간 또는 학점
교 수 역 량	교육학개론, 교육심리, 교육평가 (선택 2과목)	60시간(4학점)
	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 과목 (선택 5과목)	150시간(10학점)
직 무 소 양	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, 문화행사기획 (선택 1과목)	30시간(2학점)
	커뮤니케이션기법, 예술교육 상담 (선택 1과목)	30시간(2학점)
예 술 전 문 성	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(10과목 이상)	450시간(30학점)

▷ 문화예술교육 학력 분야별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(2급)

분야	교과목	분야	교과목
공예	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 학습방법(유아,초등,중등,일반) 공예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공예 교수법 공예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공예 교육교재·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·제작 및 시현	디자인	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(유아,초등,중등,일반) 디자인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디자인 교수법 디자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교육교재·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·제작 및 시현
만화·애니메이션	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(유아,초등,중등,일반) 만화애니메이션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만화·애니메이션 교수법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 교재·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·제작 및 시현	무용	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 학습방법(유아,초등,중등,일반) 무용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무용 교수법 무용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무용 교육교재·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·제작 및 시현
미술	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 학습방법(유아, 초등, 중등, 일반) 미술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미술 교수법 미술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미술 교육교재·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·제작 및 시현	연극	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(유아,초등,중등,일반) 연극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연극 교수법 연극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극 교육교재·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·제작 및 시현

○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[별지 제6호 서식] : 수료증 발급대장

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

1. 성명 : (생년월일 :)
 2. 주소 :
 3. 교육과정 이수내역
 ○ 교육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개월)
 ○ 교육과정 : []1급과정 [√]2급과정
 ○ 교과목 및 이수학점 또는 시간

교과영역	교 과 목	이수교과목	이수학점 또는 시간
교수역량			
	소계		총 ()과목
직무소양			
	소계		총 ()과목 ()학점()시간
예술전문성			
	소계		총 ()과목
※ 교과영역란과 교과목에는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2를 참조하여 적고, 이수교과목란에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등급별 교과영역별 실제 교육 교과목을 적습니다. 필요시 각 해당 항목의 기재 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			

기록자 성명 : (인)